

양양군체육회 안전관리 규정

양양군체육회

안전관리규정

제정

2025. 08.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양군체육회 소관의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과 대회 참가자의 안전관리와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양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직원 및 체육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란 체육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등을 말한다.
2. “안전 업무 담당자”란 체육회 행사 및 대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안전 관련 담당자”는 안전업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이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종목별 특성과 대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회별 구체적인 세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업무 우선) 양양군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모든 행사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① 회장 및 직원은 안전관리에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장 및 안전 관련 담당자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의 구성) ① 체육회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둔다.

제7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체육회 내 각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안전관리감독자) ① 체육회의 안전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 등)으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담당업무와 소속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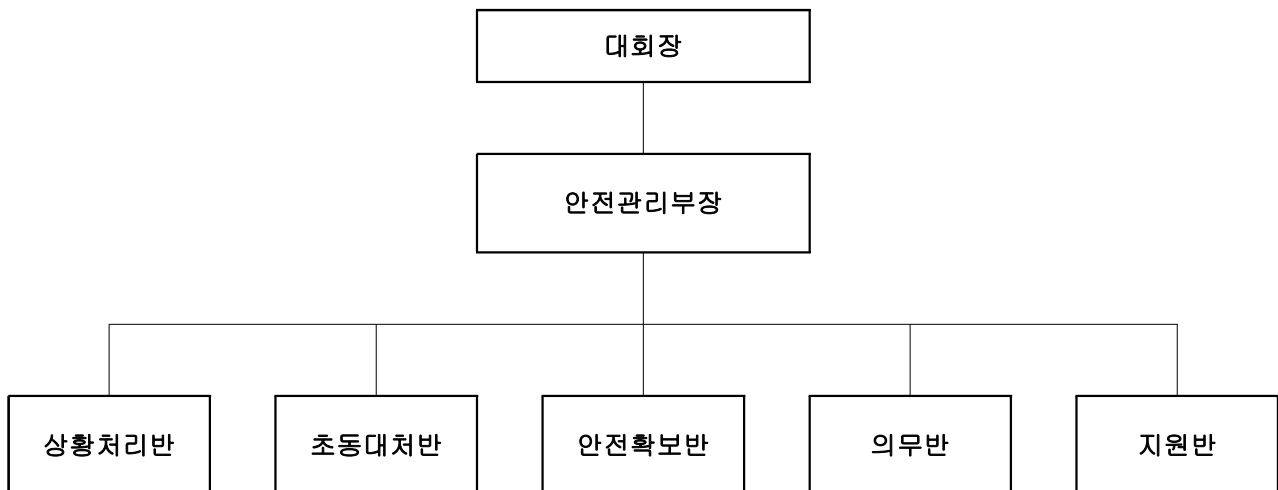
② 안전관리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안전업무 담당자를 둔다.

제10조(비상연락체계 구축) ① 각 호의 사람 및 기관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1. 대회 안전관리부 편성에 따른 담당자
2. 경기장 및 제반 시설물 관리 책임자
3. 사고(긴급상황) 발생시 대응기관 ※ 소방서, 의료기관(보건소,종합병원등), 경찰서 등

행사 및 대회관련 안전관리부(예시)



구 분	담당자	역 할
대회장	회 장	○ 대회운영 총괄
안전관리부장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 경기운영 및 상황통제 / 대회장 부재시 대행자
상황처리반	대회운영과장	○ 대회운영 및 상황처리 - 소방서, 의료기관, 시설관리자등에게 긴급 요청 - 상황 안내방송
초동대처반	기획총무과장	○ 의무반 적정장소 배치 ○ 사고 초동대응
안전확보반	대회업무담당자	○ 참가자 인원확인 및 안전 확보
의무반	의무지원기관	○ 현장 응급조치 ○ 위급환자 등 긴급 이송
지원반	자원봉사	○ 참가자 사고 전파 ○ 참가자 대피 유도

제11조(대표자회의 개최) ① 모든 행사 및 대회개최시 각호에 의거하여 대표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참가대상 : 주최·주관 단체, 경기장시설 관리자, 참가팀 대표, 안전요원 등

2. 회의내용

- 참가요강에 보험 가입 의무 명시(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실손 의료보험 등 가입 여부 기재)
- 참가자 서약(참가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
- 대회장 위험 요소 및 현장 확인
- 경기 복장 및 개인별 안전 장비 구비
- 음주,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등 위험군 의심자 참가 제한
- 대회 기간 기상정보(실시간 대기 정보, 폭염 등)
- 참가팀별 대회 참가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예시: 심폐소생술, 상황별 행동 요령, 참가 선수 메디컬체크 등) 실시 의무화
- 기타사항

제3장 안전교육

제12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교육은 교육실시 대상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체육회내 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회내 안전교육은 체육회가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3조(교육의 실시) ① 체육회는 소속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강사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체육회는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기안전교육) ① 체육회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종사 직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직원 외의 직원 : 매분기 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채용시 및 업무내용 변경시 교육) 체육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현장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 시 교육 : 4시간 이상
2. 업무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제4장 행사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점검의 책임)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직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18조(점검결과에의 조치) ①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시는 안전관리자(또는 안전업무 담당자) 확인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결책 강구 및 시정 조치한 후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업무의 중지 및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대회개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 대처로 참가자의 인명 및 물적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 표지) 안전 관련 담당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이상기후에 대한 조치) 안전 관련 담당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진행사항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21조(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조치) ① 직원 및 참가자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사고자를 사고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사장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차, 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사를 중지시키고 행사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업무 담당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 관련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 관련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직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 ⑤ 사고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사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구제조치) 체육회는 구제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비에 편성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업무 담당자인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 등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25. 08. 2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심폐소생술 방법

성인 1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절차			
1	현장확인	응급처치자에게 위험요소는 없는가?	
2	감염여부 확인		
3	반응확인		☞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의 귀 가까이 대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큰소리로 의식의 유무를 확인한다. ☞ 호흡유무 및 비정상적 호흡(심정지 호흡)을 동시에 관찰한다.
4	119에 신고 및 AED요청	☞ “119에 신고해주시고 AED 요청해주세요!”	
5	가슴압박 (30회) 실시		☞ 환자의 복장뼈(흉골)아래 1/2지점에 손꿈치를 위치시키고 팔전체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15초이상-18초이내로 30회 압박 ☞ 압박의 깊이 : 5~6cm ☞ 압박 속도 : 100~120회/분
6	기도 개방		☞ 머리젖히고/턱들기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 주의 : 환자의 턱아래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7	인공호흡 2회 실시		☞ 기도를 개방한 후 인공호흡 2회 실시 인공호흡시 1회의 호흡당 1초 불어넣기-2회 * 주의 : 인공호흡 시 과호흡 또는 과속 불어넣기 금지
8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5주기 실시	 	☞ Hand-off time(핸드오프타임) 10초 이내에 실시 할 것! * Hand-off time이란 : 가슴압박30회 후 다시 가슴압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
9	반응확인	☞ 2분동안 CPR을 5주기 실시한 후 환자의 반응확인 자발적인 호흡, 움직임, 의식이 돌아오면 소생술 중단	

성인 1인 CPR과 자동제세동기(AED)

응급처치 절차								
심폐소생술 단계	반응확인 119 신고 도움요청		가슴압박 (30회) 실시		기도 개방			
	인공호흡 2회 실시		계속			CPR 실시(30:2비율로) 5주기 실시		
자동제세동기 적용단계	전원 ON		패드 부착		리듬 분석		전기 충격	
	제세동기 패드부착		➡ 전극을 환자의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왼쪽 젖꼭지선과 겨드랑이 중앙선이 만나는 부위 = 우측 쇄골 직하부, 좌측유두선과 액와중간선 * 패드윗부분에 위치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음					
	리듬분석		➡ “모두 떨어지시오” 등을 말하면서 주위를 확인 후 처치자 본인도 떨어져 분석을 방해하지 않는다.					
	전기충격 버튼누름		➡ “모두 떨어지시오” 등을 말하면서 주위를 확인 후 처치자 본인도 떨어진 후 쇼크 버튼을 누른다. * 쇼크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함					
전기충격을 한 후 바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비율로 5주기 실시 ➡ 가슴압박은 전기충격을 실시 한 후 즉시 실시함								
리듬 분석		전기 충격		가슴 압박 (30)		인공 호흡 (2)		
CPR  CPR  CPR  CPR  Go to A								

참고 2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②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③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④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⑤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⑥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⑦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⑧ 어린이는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포에 질려 옷장, 침대 밑에 피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자녀의 위치를 항상 확인 합니다.
- ⑨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⑩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⑪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낮은 자세로 한손은 벽면을 짚어 피난방향을 설정하여 대피하여야 같은 장소를 맴돌지 않습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멈추고, 엎드려서, 바닥에 뒹굴어 주세요.
 - 건물에 갇혔을 때에는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하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3 붕괴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① 건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야 합니다.
- ②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건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 ③ 부상자는 가능한 응급처치를 한 후 함께 탈출합니다.
- ④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 ⑤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하여 이동해야 하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
- ⑥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합니다.
- ⑦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참고 4 지진, 홍수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① 지진

- ①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②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 ③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 ④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됩니다.
- 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 ⑥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② 홍수

- ①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② 하천의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③ 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④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 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